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창 업 경 제 과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구 미 시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초기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나.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7회계연도(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대상기관

기관명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라운지(유)
대 표	유주현	박상태
설립일	2014. 12. 17.	2020. 6. 5.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융합기술로 66

(2) 출자예정액 : 10억원

- 26년 2.5억원(25%), 27년 2.5억원(25%), 28년 2.5억원(25%), 29년 2.5억원(25%)

(3) 출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나. 투자조합 개요

(1) 조 합 명 :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2) 운 용 사 :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라운지(유)

(3) 출 자 자 :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스라운지(유), 모태펀드, 경북도, 구미·경산시, 지역기업

(4) 결 성 액 : 53억원(시비 10억원) * 총 결성액 및 출자자 변경될 수 있음

(단위:억원)

구 분	출자기관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53	13.25	13.25	13.25	13.25
GP(운용사)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	0.25	0.25	0.25	0.25
	파트너스라운지(유)	1	0.25	0.25	0.25	0.25
LP(출자자)	모태펀드	20	5	5	5	5
	경상북도	10	2.5	2.5	2.5	2.5
	구미시	10	2.5	2.5	2.5	2.5
	경산시	10	2.5	2.5	2.5	2.5
	지역기업	1	0.25	0.25	0.25	0.25

(5) 존속기간 : 10년(투자4년, 회수6년)

(6) 투자대상 : 경북 5대 첨단산업 분야 딥테크 초기창업기업

(7)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및 1회 출자금 납입 (26년)
- 2회 출자금 납입 (27년)

(8) 기대효과

- 도내 우수 및 유망기술 벤처기업·스타트업에 자금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

다. 출자 필요성

(1)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AI·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경북 5대 첨단산업분야 지역 스타트업 투자환경 조성

(3) 성장성이 인정되는 우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2.5억원) * 출자예정액 10억원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지스타(G-star) 경북 하이퍼 루키 펀드 출자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자 제안서 상 경북도, 지자체, 지역기업, 모태펀드 출자금액 책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세출	250	250	250	250	1,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시 비	250	250	250	250	1,000
합 계	250	250	250	250	1,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창업경제과 창업투자팀 임형석(☎480-6052)

소 관 부 서		창업경제과
입	과 장	권 미 영
안	팀 장	전 기 훈
자	담 당 자	임 형 석 (480-6052)